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가단21011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2017. 5. 30.

판결 선고2017. 6. 15.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477,581원 및 그중 134,620,511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충남 금산군 D 공장용지 981m²에 관하여 2014. 9.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143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 1) 원고는 2014. 4. 23. 피고 회사와, ①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2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15. 4. 2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및 원고의 채권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연 12%로 정해졌다. 피고 B은 2014. 4. 2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원고는 2014. 3. 23. 우리은행에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의 보증서를,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4,250만 원의 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에 우리은행은 2014. 4. 29. 피고 회사에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1억 원을,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 4) 피고 회사는 2014. 12. 30.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우리은행은 2015.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 5) 이에 원고는 2015. 4. 17.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134,620,511원(= ① 원금 90,00,000원, 이자 1,374,386원 + ② 원금 42,500,000원, 이자 746,1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2015. 5. 8. 현재 총 857,07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증여 등

1) 피고 B은 2008. 3. 5. 충남 금산군 D 공장용지 9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2014. 9. 15.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로서 135,477,581원(= 대위변제금 134,620,511원 + 대지급금 857,07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34,620,5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6. 11.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때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때에 원고가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1) 피고 B의 적극재산

(가) 갑 제9호증의 3(을 제14호증의 1과 같음),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전유성구청장, 금산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토지, ② 충남 금산군 E 전 241m²(이하 'E 토지'라 한다), ③ 피고 회사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70만 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0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 및 F과 특허번호 G로 등록된 특허발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한편,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마2412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의 위 등록특허에 관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등록특허에 관한 공유지분은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29.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4,74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73,57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은 그 시가를 63,765,000원 또는 73,57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일응 위 73,575,000원으로 보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E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40,166,66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은 이를 36,150,000원 또는 40,166,66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E 토지의 시가를 일응 위 40,166,666원으로 보기로 한다.

(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 70만 주의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시가는 많아야 아래 ②에서 보는 106,000,000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은 총 100만 주로서 비상장주식이다. 이 사건 주식 70만 주의 액면금은 총 3억 5,000만 원(1주당 액면금 500원)이나, 주식의 액면금이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4. 3. 원고에게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피고 B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총 106,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을 제2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13년도 순손익은 -87,435,681원, 2014년도 순손익은 -69,127,765원, 2015년도 순손익은

78,117,709원인 사실, 피고 회사가 2015년도에 순손익으로 돌아선 이유는 보험차익 249,129,988원을 포함하여 영업외 수익이 총 302,848,384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영업외 수익을 제외한 영업손익은 -14,504,0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4. 9. 15.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0원에 가깝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④ 한편, 을 제2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2013. 12. 31. 현재 자본 총계는 총 53,405,623원이고, 2014. 12. 31. 현재 자본 총계는 334,277,8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4. 9. 15.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많어도 약 344원(= 334,277,855원 / 총 발행주식 100만 주,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 70만 주의 순자산가치는 많아야 총 240,800,000원(= 344원 × 70만 주)이다.

⑤ 기업의 가치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순손익가치가 낮고 순자산가치가 높은 경우 그 주식은 순자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순자산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산술적인 의미만 있을 뿐인데, 실제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처분할 경우 제반 거래비용 및 법인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그 주주에게 순자산가치 만큼의 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은 많이 보유하였으나 그에 비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0원에 가깝다고 전제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 70만 주의 가액은 많아야 96,340,000원[= {(순손익가치 0원 × 3) + (순자산가치 240,800,000원 × 2)} / 5]이라 할 수 있다. 위 가액은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가액 106,000,000원과 유사하다.

⑦ 을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2012. 6. 15.

이 사건 주식 3만 주를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I은 2013. 6. 19. 이 사건 주식 3만 주를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H은 2011. 7. 6.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I은 2013. 6. 24.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각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30만 주인 점,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각 1,500만 원임에도, H과 I은 피고 회사에 각각 1억 원 및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또한, H이 1억 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한 시기는 H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점, H과 I이 같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에 송금한 액수는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H이 이 사건 주식 3만 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I이 이 사건 주식 3만 주를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각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주식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 B의 소극재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광역시장, 대전서구청장, 옥천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표 순번1 기재 채무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위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도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1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35,477,581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55,368,160원
3	대전 서구에 대한 과태료 채무	395,800원
4	대전시에 대한 과태료 채무	480,000원
5	옥천군에 대한 과태료 채무	600,000원
합계	592,321,541원	

(3) 피고 B의 채무초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많아야 총 219,741,666원(= 73,575,000원 + 40,166,666원 + 106,000,000원)임에 반해 소극재산의 가액은 총 592,321,541원으로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연대보증인에게 법률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4. 5.부터 2014. 3. 25.경까지 10년간 피고 회사에서 일하였고, 그동안의 급여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 C과 피고 B이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적극재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적극재산이 있었고, 그 적극재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면 이는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선의 여부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봉민